제958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<table>
<tr><th>no.</th><th>법령명</th><th>규제내용</th><th>결과</th></tr>
<tr><td>1</td><td>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
(해양수산부)</td><td>1.외해 수하식양식업의 면허 발급기준 신설(신설)
ㅇ 외해양식업의 종류에 수하식 양식업을 추가하고, 양식방법, 양식장 구역의 한계, 양식장 사이의 거리, 양식장 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등 마련
<table>
<tr><th colspan="2">방법</th><th>건홍식 방법(김·파래·매생이 양식)</th><th>연승식 방법(기타 해조류 양식)</th></tr>
<tr><td rowspan="3">시설기준</td><td>양식장 구역의 한계
(단위 : ha)</td><td>ㅇ어촌계 (지구별 수협) : 1 이상
ㅇ어촌계 외의 자: 1 이상 20 이하</td><td>좌동</td></tr>
<tr><td>양식장 사이의 거리(단위 : m)</td><td>200 이상</td><td>100 이상</td></tr>
<tr><td>양식장 면적에 대한 시설 비율
(단위 : %)</td><td>5 이상 18 이하</td><td>5 이상 10 이하
(단, 미역·다시마 : 5 이상 20 이하)</td></tr>
</table>
▶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9조</td><td>1.비중요</td></tr>
</table>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2	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자동차 안전기준 확인방법(신설) ㅇ 좌·우측에 승강구를 갖춘 승합차을 활용하기 위한 세부 안전기준으로 – 오작동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활용되었다고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①·②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규정 – ① 위치정보시스템이나 통신장치 등 또는 중앙관제센터와 차량 간 통신을 통해 정류장 방향을 인식할 수 있는 장치를 활용하여 반대방향 승강구 개폐방지 기능을 갖출 것 – ② 자동차 내부에 설치하는 장치로서, 다음을 모두 만족할 것(별표2 25의 3.5.1.2.) 1)운전석을 기준으로 좌측(우측) 승강구의 개방 스위치는 좌측 (우측)에 부착 2)점멸등, 계기판넬 등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정류장 방향에 맞게 문이 열리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장치 설치 3)승강구 개방시 점멸하는 작동등을 승강구 주위에 설치하되, 작동등은 버스 내부 어디서든 확인이 가능할 것 ▶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제3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3	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의무(신설) ○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대상, 교육시기 등 의무 신설 ① (대상장치) 초경량비행장치(9종) 중 패러글라이더에 한해 안전교육을 의무화 (안 제306조의제1항) ② (교육의무자)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과 패러글라이더를 사용하여 조종교육(유·무상)을 하려는 사람 (안 제306조의2제2항 · 제3항) ③ (교육내용 · 시간) △ 최초교육과 정기교육(매 2년)으로 구분하고, 최초교육 8시간(대면), 정기교육 4시간(대면 또는 온라인) 실시 △ 교육내용은 항공안전 관계법령 · 규정, 기술능력, 사고사례, 조종자 준수사항 (안 제306조의2제4항) ▶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의2 2.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기준(신설) ○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· 단체의 인력·장비 및 시설기준(안 제306조의3제1항) – (인력기준) 비행시간이 200시간 이상이고 조종교육교관과정을 수료한 지도조종자 (시행규칙 제307조제2항제1호가목) 1명 이상 – (장비 · 시설기준) 사무실, 교육장(대면), 컴퓨터 및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교육용 비행장치(비대면), 저장매체 ㅇ 위탁기관 신청시 첨부서류* 및 신청 후 내용변경 시 보고의무 부과(안 제306조의3제2항 및 제4항) * 조직도, 인력 정원·자격·경력 서류, 연간 교육 계획서, 교육 내용 및 평가방법 등 교육 시행 계획서, 서류 보관 계획 ▶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의3 3.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(신설) ㅇ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비행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에 대한 조종자 증명 효력 정지 세부기준 마련(안 별표44의2제7호) – 1차 위반 시 효력 정지 30일, 2차 60일, 3차 이상 180일 ▶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의2	
4	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개정안 (농림축산식품부)	1.온실의 환기구 규격 강화(강화) ㅇ 수입허가 금지품 관리장소(재식용 온실)의 허가요건으로 환기구에 해파필터 또는 동등한 필터 설치 규정 ▶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제2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5	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개정안 (농림축산식품부)	1.국제농업·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대상 및 지정기준(신설) ○ 국제농업 · 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 지정 관련 대상기관, 지정기간, 지정기준, 제출서류(안 제7조) – (대상기관)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·위탁받은 기관, 정부출연연구기관, 공공기관, 농업 ·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· 단체 – (지정기간) 5년 – (지정기준) ▲사업 목표 및 계획이 적절할 것, ▲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이 3명 이상 있을 것, ▲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이 있을 것 – (제출서류) ▲사업계획서, ▲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, ▲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, ▲최근 3년간 연구 또는 사업활동 실적 서류, ▲최근 2년간 재정 집행 및 결산 현황 ▶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제7조	1.비중요
6	기후 ·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(기상청)	1.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기준(신설) ○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[별표 1]의 인력·시설·업무에 대한 지정기준 또는 해양·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하여서는 [별표 2]의 인력, 시설, 업무에 대한 지정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 ▶기후 ·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취소기준(신설) ㅇ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 지정취소 처분 ㅇ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연구개발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및 지정취소 처분 ㅇ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경고 및 지정취소 처분 ㅇ 지정취소 시 10일 내에 지정서를 반환 ▶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3.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(신설) ㅇ 기후변화과학사의 자격요건으로 ①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(예정)인 자 또는 ②기후·기후변화과학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일 것을 규정 ▶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7	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의약품 판촉영업자로 신고 시 의무사항(신설) ㅇ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신고 시 의무사항 (개정안 제43조의2 제1항, 제2항) – 법정 서식에 서류(신고기준 충족여부 확인 서류, 의사·전문의 진단서)를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함 ▶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2.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의무(신설) ①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교육 이수 (개정안 제43조의3 제1항, 제3항) – (교육과정·시간)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, 신규교육은 신고증 발급일부터 3개월 내 24시간,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수료일 기준 다음 해부터 매년 8시간 교육 – (교육내용) ‘의약품 판매질서, 경제적 이익 제공 및 지출보고서* 작성, 의약품 판촉영업자 준수사항, 기타 필요한 사항’ 이며, 이외 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한 외부교육을 이수한 경우도 인정 가능 * 의약품공급자 및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의 내역에 관한 지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고, 5년간 보관해야 함(「약사법」 제47조의2 제1항)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 5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– (교육방법)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▶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3,제44조 3.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운영 기준(신설) ㅇ 교육기관의 운영 기준 마련 – 매년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* 수립, 다음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제출 및 승인 필요 * 다음 연도의 교육 내용, 교육비 등 포함 – 승인 받은 연도별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 실시 – 교육 이수자에게 수료증 발급, 수료자 명단 등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의 기록 및 보관(기록한 날부터 2년) – 전년도의 교육실시에 관한 기록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복지부장관에게 보고 ▶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4.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 취소 사유(신설) ㅇ 교육기관 지정 취소사유 규정 (개정안 제43조의3 제8항) – (필요적 취소)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, 교육기관의 부적정 운영(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 미개설, 교육 부실 등) – (임의적 취소)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이수 인정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▶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5.의약품 판촉영업자 행정처분 기준(신설) ㅇ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(영업정지, 영업소 폐쇄) 기준 설정 (개정안 별표 3) - 신고수리 취소·영업소 폐쇄·업무정지 처분 대상 6건(「약사법」 제76조 제1항 5호의7~5호의 12)에 대한 1~4차 위반차수별 행정처분 설정 ▶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	
8	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(소방청)	1.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(강화) ㅇ 방염제의 납 함량 및 4대 중금속(납, 카드뮴, 수은, 6가크로뮴) 함량의 합을 제한하는 기준 신설4 - 방염도료 내 납(Pb), 카드뮴(Cd), 수은(Hg) 및 6가크로뮴(Cr6+) 함량의 합은 질량분율로서 1000 ㎎/㎏ 이하이고, 납 함량은 질량분율로서 90 ㎎/㎏ 이하이어야 한다. ▶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	1.비중요